

# 장기요양보험 주요부당사례

2017. 11

*h·well*  
국민건강보험  영양심사실

## 1 추가가감산 위반

## ■ 인력배치기준 위반

## 관련근거

- ☞ 장기요양기관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,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2조,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따라 시설별 •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
- ▶ 직원의 배치기준(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1항 별표 4)

(2016.12.31.이전)

직종별 시설별		시설의 장	사무 국장	사회 복지사	의사 (한의사 를 포함한 다) 또는 축탁의 사	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	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	요양 보호사	사무원	영양사	조리원	위생원	관리인
노인 요양 시설	입소 자 30명 이상	1명	1명 (입소 자 50명 이상)	1명 (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)	1명 이상	입소자 25명 당 1명	1명 (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)	입소자 2.5명당 1명	필요 수	1명 (입소 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)	필요 수	필요 수	필요 수
노인요 양시설	입소 자 30명 미만 10명 이상	1명	1명	1명	1명	필요수	필요수	입소자 2.5명당 1명			필요수	필요수	
노인공동생활 가정			1명			1명		입소자 3명당 1명					

(2017.1.1. 이후)

직종별 시설별		시설의 장	사무 국장	사회 복지사	의사(한 의사를 포함한다) 또는 축탁의 사	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	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	요양 보호사	사무원	영양사	조리원	위생원	관리인
노인 요양 시설	입소 자 30명 이상	1명	1명 (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)	1명 (입소자 100명 을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)	1명 이상	입소자 25명 당 1명	1명 (입소자가 100명 을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)	입소자 2.5명당 1명(치매 전담실은 2명당 1명)	1명 (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)	1명 (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)	입소자 25명 당 1명	1명 (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)	1명 (입소자 50명이 상인 경우로 한정함)
노인 요양 시설	입소 자 30명 미만 10명 이상	1명	1명	1명	1명		입소자 2.5명당 1명				1명		
노인공동 생활가정			1명			1명	입소자 3명당 1명 (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)						

☞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•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용  
감액산정

### 부당사례 (1)

○○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1명이 '14.5월~'14.11월까지 총 7개월 동안 실제  
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요양보호사로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 
것으로 등록하고 급여비용 청구

### 부당사례 (2)

○○요양시설은 종사자 1명이 '14.5월~'14.12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주방에서만  
근무하였으며 요양보호사로서는 주1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 
야간근무만 하였으나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 
급여비용청구

### 부당사례 (3)

○○요양시설은 물리치료사 2명이 각각 '13.9월~14.7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'14.8월~15.8월까지 총 13개월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등록하여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

### 부당사례 (4)

○○요양시설은 작업치료사 1명이 '14.4월~15.1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조기퇴근하여, 월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, 정상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

## ■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

### 관련근거
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따라,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외에 인력을 직종별로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급여비용 가산을 청구하여야 함

### 부당사례 (1)

○○요양시설은 '14.6월에 간호조무사 3명이, '14.8월에 간호조무사 1명이 각각 1인의 근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

### 부당사례 (2)

○○요양시설은 간호사 1명이 '14.1월~6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실제 160시간 미만 근무하여 간호사 1명을 배치하지 않았음에도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간호사 배치 가산 비용을 청구

## ■ 정원초과기준 위반

### 관련근거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, 제32조 및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따라, 입소자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

### 부당사례(1)

○○요양시설은 등급외자 1명에 대해 '15.3월 총 1개월 동안 해당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나 입소신고를 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급여비용 감액 없이 청구

### 부당사례(2)

○○요양시설은 등급외자 1명을 '13.9월~'14.7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입소현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, 입소자 4명은 입소일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, 정원을 초과 운영하였음에도 급여비용 감액없이 청구

## ■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

### 관련근거
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따라,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(전문인 배상책임보험)에 가입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

### 부당사례 (1)

○○요양시설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, '11. 10월 19일 정원이 변경되었음에도 '12.7월~'12.11월의 총 5개월 동안, '13.3월~'13.4월까지 총 2개월 동안 변경된 정원(현원)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음

### 부당사례 (2)

○○요양시설은 등급외자 1명이 2014년 3월7일자로 3등급 수급자가 됨으로서 현원이 10명인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여야하나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, 미가입기간('14.3월7일~'14.7월31일)에 따라 감산 청구하여야 함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100% 수가로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

## ■ 요양시설 인력 등록 후 병설기관(병원)과 업무 겸임

### 관련근거

장기요양기관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,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,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따라 시설별 ·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

### 부당사례

○○요양시설은 '14.8월~'16.1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3명이 동일대표, 동일부지 2, 3, 4층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일부 혹은 전부 근무하였음에도 요양시설의 종사자로 등록하고,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

## ■ 겸직기준 위반

### 관련근거
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따라 가산이 적용되는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함

### 부당사례

○○요양시설은 간호조무사 1명이 '14.2월~'14.5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주·야간보호 및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로 겸직을 하고 있었음에도 간호조무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 받고 급여비용을 청구

## 2 산정기준 위반

## ■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

### 관련근거
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따라, 입원 등의 사유로 외박한 경우에는 수가의 50%를 산정하고, 외박 1회당 10일 이내로 월 15일까지만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

### 부당사례

○○요양시설의 수급자 1명은 '14.7월~'15.2월 중 총 44회에 걸쳐 외박하였으나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급여비용을 청구

## 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증일 청구

### 관련근거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 제1항,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근거하여, 시설급여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

### 부당사례(1)

○○요양원의 수급자 1명은 대표자의 모친으로 '15.3월~'15.4월까지 총 2개월 동안 실제 동일 건물 1층(○○주간보호센터)의무실에서 생활 및 숙박하여, 상기관에 입소한 사실이 없으나 사실과 다르게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작성한 후 급여비용 청구



## II 재가기관 부당 사례

### 1 허위 청구

#### 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증일 청구

##### 관련근거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5조 제2항 및 제38조 제1항, 「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근거하여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하고,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함

##### 부당사례(1)

○○재가기관은 수급자 1명에게 '14.1월~15.6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실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, 그 대가로 수급자 가족에게 매월 30~40만원씩 비용을 지급하고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청구

##### 부당사례(2)

○○재가기관은 수급자 3명에게 '15.2월~15.6월까지 총 5개월 동안 매주 3회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거나, 일요일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

##### 부당사례(3)

○○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2명에게 '13.6월~14.2월까지 총 9개월 동안 토요일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, 요통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

## 2 산정기준 위반

### ■ 주야간보호기관 기준 위반

#### 관련근거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제23조,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근거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소시설 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

#### 부당사례

○○재가기관은 수급자 3명에게 '14.1월~'15.6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숙박을 제공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청구

### ■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준 위반

#### 관련근거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제32조,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따라,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요양보호사 2명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

#### 부당사례

○○재가기관은 수급자 2명에게 '12.9월~'15.8월까지 총 36개월 동안 실제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

## ■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

### 관련근거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제38조,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실제 서비스 제공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

### 부당사례

○○재가기관은 수급자 3명이 '12.5월~15.2월까지 총 34개월 동안 동일 건물의 요양시설에서 입소하여 생활하였으나, 단기보호에서 생활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

## ■ 가족인 요양보호사 직업에 종사하면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

### 관련근거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제32조,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

※ 일정한 직업 :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(장기요양기관 포함)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며, 다만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음.

### 부당사례

○○재가기관은 요양보호사 4명이 '14.1월~9월까지 총 9개월동안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에 종사하면서도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

## ■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

### 관련근거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제38조,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실제 서비스 제공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

### 부당사례

○○재가기관은 수급자 1명에게 '14.7월~10월까지 총 4개월 동안 가족요양보호사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타 요양보호사 2명이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

## 3 수가가감산 위반

## ■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

### 관련근거
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따라,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(전문인 배상책임보험)에 가입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

### 부당사례

○○재가기관은 요양보호사 17명이 '13.8월~'15.3월까지 총 20개월 동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급자 26명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

## ■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위반

### 관련근거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제32조,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따라,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산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는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제공시간 중에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의 적정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

### 부당사례

○○재가기관은 사회복지사 1명이 '14.8월~'14.12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수급자 9명에게 사회복지사나 관리책임자가 수급자를 방문상담하지 않았음에도 사회복지사가 수급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것처럼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사회복지사 가산비용을 청구

## 4 기타

## ■ 무자격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

### 관련근거

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 2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따라,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

### 부당사례

○○재가기관은 '14.12월~'15.11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인력 1명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격이 있는 타 요양보호사 명의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

## ■ 본인부담금 면제·감경 위반

### 관련근거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5조에 따라,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·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

### 부당사례

○○재가기관은 '15.5월~'15.10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수급자 6명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고, 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기관통장에 매월 입금하는 방법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

### 부당사례

○○재가기관은 '15.5월~'15.10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수급자 4명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였고, 수급자 1명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정액으로 매월 3만원씩 수납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

## ■ 비밀누설 금지 위반

### 관련근거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2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59조 제2호에 따라,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제공받는 자 또한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

#### ※ 벌칙조항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5호 :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
(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: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
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

### 부당사례

○○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근의 다수 (○○○○재가기관 등 9개소) 재가기관에서 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복지용구를 제공함